

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0년 11월 15일 조례 제1117호
전부개정 2025년 9월 19일 조례 제2304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이란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,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역할)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
2.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
3. 의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사항 건의
4.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
5.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 등) ① 모니터단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② 모니터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다만 의장은 지역별·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모니터단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하며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해촉)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
2. 다른 시·군 등으로 진출하였을 때
3. 모니터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
4. 그 밖에 의정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모니터단을 위촉할 수 있으며, 새로 위촉된 모니터단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의견의 접수 및 처리) ① 모니터단은 제3조에 따른 각종 제안·건의 등을 할 수 있고,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제안·건의 및 의견 등은 우편·전화·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, 모니터단 담당 공무원은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모니터단이 제출한 제안·건의 및 의견 등은 의회에서 처리하되,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오산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오산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모니터단 활동지원)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보호) 제6조에 따라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모니터단 신분증) ① 의장은 모니터단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② 신분증을 분실·훼손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「오산시의회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실비보상) 모니터단이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〈2025. 9. 19 조례 제2304호 전부개정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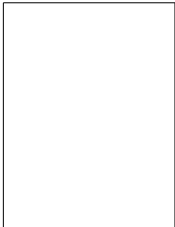
의정모니터단 의견서

성명		연락처	
분류	☐ 방청모니터 ☐ 입법동향조사 ☐ 정책건의 ☐ 우수사례소개 ☐ 시민불편해소		
제목			
내용			
개선건의			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의정모니터단증

전 면

의정모니터단증

홍길동
오산시의회

후 면

발급번호
성명 :
생년월일 :
이 사람은 오산시의회 의정 모니터단임을 증명함.
년 월 일
오산시의회 의장(직인)

1. 사진규격 : 3×4.5cm
3. 신분증 크기는 5.4cm × 8.5cm로 한다.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의정모니터단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

- 성 명 :
- 주 소 :
- 생 년 월 일 :
- 재발급 사유 :

「오산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9조에 따라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※ 첨 부 - 사진(반명함) 1매

 년 월 일

신청인 주 소 :
 성 명 :

오산시의회의장 귀하